

[일련번호 : 108]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및 통 보

**제 목** 기간제근로자 퇴직 정산 공제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등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임금지급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업무 편의상 당월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퇴직 다음 달에 정산·납부될 4대보험료를 예상하여 일정 금액을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2024년 12월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시에도 당월 퇴직 예정자 39명에 대하여 다음 달 4대보험료 정산액 납부를 목적으로 총 7,45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2024. 12. 31. 2024회계연도 종료로 위 공제금액은 불용처리되어 소멸되었음에도, ◆◆과는 2025회계연도 예산 7,450,000원을 전년도에 공제한 임금이 이월된 것처럼 근로자별 공제임금으로 산정하여 2025년 1월 4대보험 퇴직 정산금 근로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잔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에 해당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근로자의 고용 목적 및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도시농업관리사, 연의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2025년 1월 집행 시 해당 사업예산이 아닌 임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녹지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을 일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 55명에 대하여 총 6,05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로 해당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 6,200,000원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공지도사 ○○○의 경우, 2023년 12월 임금에서 보험료 정산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월 150,000원을 해당 근로자의 공제 임금으로 산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임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다지급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15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회계연도 말(12월) 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선공제 방식을 제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